

教授의 負擔과 處遇

金潤泰

(西江大 教育學科 副教授)

I. 序言

1980년을 고비로 급속히 肥大해진 우리의 大學教育은 그 성격을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 1982년 현재 우리나라 大學教育 就學率은 해당 연령층의 20%를 上廻하고 있어, 이미 大衆化段階로 깊숙이 進入해 있는 것이다. 이는 유럽先進諸國水準(20~26%)이며 이웃인 일본(29%)과도 큰 차이가 없는 大學의 量的 成長을 보여 준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大衆化 추세는 그렇게樂觀的으로만 볼 수는 없다. 量的 機會擴大에 수반되어야 할 諸教育的 條件이 整備·維持·確立되지 않아 우리의 大學education은 危機에 처해 있다고 지적된다. 특히 우수한 教授의 確保問題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보통, 교육의 요소로 교원, 학생, 교육내용 그리고 환경요인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主體는 바로 教員이기 때문에 教員의 質如何가 모든 教育의 過程을 좌우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학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教授의 養成과 確保는 長期間의 時日을 요하며,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교육과 학문적 연구를 축적해야만 교수가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教授職은 處遇 등 誘因體制面에서 他專門職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표적 전문직이므로 적절한 유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수한 교수의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래 大學教授社會에서는 다양한 役割期待와 過多한 수의 학생 저도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과중함을慨嘆하는 소리가 높다. 또한 教授의 處遇가 부담에 비해 만족스런 상태에 있지 않으며, 교수의 報酬는 장기 근속할수록 다른 전문직의 그것보다 낮아진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教授職의 誘因價는 떨어지고 우수한 인재가 교수직에 대해 매력을 갖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이 글에서笔者는 우리 사회가 교수에게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역할의 제작면에서 教授의 負擔을 분석해 보고, 한편 이러한 다양한 부담을 안고 고민하는 教授에 대한 處遇는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教授人事政策의 改善方向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제시되는 내용이 모든 대학, 모든 교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경제로 하며, 제한된 자료 속에서 평소에 생각한 바를 논의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II. 過重한 教授의 負擔

교수의 부담은 교수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양

하게 논의될 수 있다. 교수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1) 학생들에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教授者로서, (2) 전문적 학술을 연구하는 學者로서, (3)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관한 指導者로서, (4) 현실 사회문제의 해결과 社會改造에 참여하는 社會奉仕者로서의 역할이 그것이다.

먼저 授業負擔에 관련하여,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을 보면, 1982년 현재 전문대학이 1:33.1이고 4년제 대학은 1:32.8로 나타났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이 5년전에 비해 크게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에 의해 교수의 充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表 2>와 같이 세계 주요국가에서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이 20명 미만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가 얼마나 부족하며, 그 결과 교수의 부담이 얼마나 과중한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교수의 資質을 저하시키고 전문적 成長과 發展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될 것이다.

교수의 授業負擔은 週當 講義擔當時間과도 과중함을 알 수 있다. 표준수업시간 9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하는 교수가 4년제대학에서도 40%를 上廻하고 있는 것은 교수의 과중한 부담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사실이다. 심지어는 週當 20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교수도 있어 대학 교

육의 성격마저 의심케 할 정도이다. 또한 <表 1>과 <表 3>에서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크게 악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표준 수업시간수를 초과하는 교수의 비율은 별로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수는 증가하지 않은데 반해 주당 수업시간수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사실은 大單位 講義가 盛行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過密學級이니 過多學級이니 하는 말은 초·중등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量產體制下의 大學教育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어 버렸다.

이 외에도 論文指導, 특히 大學院生의 논문지도시간이 정규 강의담당 시간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거나, 學部講義와 大學院講義時間과 같은 비중으로 계산하는 모순 등은 관련 교수의 부담을 더욱 과중하게 만들고 있다.

다음은 教授의 負擔으로 學術研究活動을 지적할 수 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지도적 인격을 함양하는 과정에서, 관련 연구를 기초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참가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함께 있어서도 전문적 학술연구를 토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연구활동은 教授生活의 前提가 되는 교수의 中核活動이다. 이는 교수가 학문의 연구자 또는 학자로서의 역할 기대에 일치하는 행동이라 하겠다.

그러면 學術研究를 支援하는 條件은 어떠한가? 앞에서 말한 과중한 수업부담 외에도 연구

<表 1> 大學教授 1人當 學生數

區分	年度	1978	1979	1980	1981	1982
専門大學		25.7	14.4	25.6	31.8	33.1
4年制大學		24.2	25.3	27.9	30.7	32.8

※ 資料：文教部，文教統計年報，1978~1982。

<表 2> 世界 主要國家의 大學教授 1人當 學生數

國別	米 國	英 國	日 本	カナ다	호 주	索 勒
教授 1人當 學生數	16.7	8.3	19.6	15.7	13.8	15.3
基 準 年 度	1975	1975	1976	1974	1975	1975

※ 資料：①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77.

② 日本文部省，學校基本調查報告書，1976.

〈表 3〉 適當 授業時間數別 教授現況 (4년제 대학)

연도	기간	계	5시간 이하	6~8	9~11	12~14	15~17	18시간 이상
1978		11,475 (100.0)	3,133 (27.3)	1,119 (9.7)	2,798 (24.4)	2,256 (19.7)	1,374 (12.0)	795 (6.9)
1979		13,059 (100.0)	3,540 (27.1)	1,252 (9.6)	3,264 (25.0)	2,585 (19.8)	1,551 (11.9)	867 (6.6)
1980		14,458 (100.0)	3,952 (27.3)	1,312 (9.1)	3,142 (21.7)	3,059 (21.2)	1,859 (12.9)	1,134 (7.8)
1981		17,481 (100.0)	5,343 (30.6)	1,562 (8.9)	3,453 (16.7)	3,285 (18.8)	2,178 (12.5)	1,660 (9.5)
1982		20,137 (100.0)	6,483 (32.2)	1,585 (7.8)	3,744 (18.6)	3,963 (19.7)	2,615 (13.0)	1,747 (8.7)

※ 註 : () 내 숫자는 각 연도별 전체 교수에 대한 구성비 (%)임.

資料：文教部, 文教統計年報, 1978~1982.

비, 연구조교, 연구시설 및 도서 등 研究活動支援條件은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지원조건에서도 교수는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또 사회봉사자로서 그 소임을 충실히 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내체로 교수의 研究結果는 학생들의 강의는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 학문의 정립,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또한 교수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實績審查用 資料로서도 연구논문이 활용되고 있다. 즉 교수의 任用이나 昇進을 결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교수는 어떠한 형태건, 어떠한 動機에 서전 간에, 연구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교수는 결국 大學社會에서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중한 수업부담 속에서도, 또 빈약한 연구환경 속에서도 학술연구를 해야 하는 교수의 고민과 부담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大學院 講義에서 研究는 先行要件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부담, 학생지도 부담, 기타 계약조건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없는 교수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學生指導의 부담이 큼을 들 수 있다. 이 부담은 授業負擔과 더불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담이다. 사실, 교수는 본질적으로 학자인 동시에 교육자라 하겠다. 교육자로

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학습시키는 책임 외에도 건전한 가치관, 태도, 및 지도적 인격을 함양하는 임무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수업부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大量教育體制의 虛點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특수상황에서 學生分擔指導는 교수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1인의 교수 가 보통 70~80 명의 학생을 분담 지도하게 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교수와 학생들간의 개별적 접촉이나 면담기회가 매우 적기 마련이고 형식적 지도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수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와 필요 및 욕구 등을 다루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의 질서와 대학의 규율도 확립해야 하는 이중적役割 수행에서 오는 모순과 갈등도 적지 않다.

근래 학생지도에 관련하여, 교수가 작성해야 하는 推薦書 제도는 새로운 큰 부담으로 등장하였다. 종래 학생지도 방식을 公式化하는 것으로 보이는 教授의 推薦書는 교수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 師弟之間의 情은, 교수로 하여금 1학년부터 每學年末에 학생을 평가하여 졸업시에 종합하는 全評價過程에서 갈등과 착잡한 심정을 갖도록 한다. 또한 정부에 의해 권장되고 있는 學生에 대한 評價要素 즉 판단력, 창의력, 지도력, 책임감, 인간관계, 국가관 등은 그 의미의 多義性과 模糊性 때문에 실제 평정 상황에서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르며 그

평정결과도 신뢰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 아마 의도한 바대로 평정한다면 교수의 대부분의 시간은 추천서 작성에 투입되어야 할 것 같으며,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 학생지도·평가 또는 추천서 제도로 퇴색될지도 모른다.

네째로, 교수는 또한 社會奉仕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물론 이 역할은 교수에 따라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영역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교육자로서의 역할 자체가 결국은 국가 사회를 위한 미래의 役軍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봉사자로서의 역할의 일단을 이미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오늘의 사회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발전과 개조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교수의 역할기대의 하나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인사들에 대해서도 知性的 안내자로서 봉사해야 함을 뜻한다. 즉 교수는 사회의 대표적인 知性的市民으로서 현실 사회에 참여할 뿐 아니라 전문적 의견을 가진 斯界의 權威者로서 지역사회나 국가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 기대된다.

정부 및 사회기관을 위한 강연회,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전문적 의견을開陳한다든가, 현실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는 연구와 이 연구를 통한 현실참여를 하기도 한다. 또 최근에는 成人教育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 기대된다.

이처럼 현실 사회의 발전과 개조를 위하여 보다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를 하는 社會奉仕活動은 오늘날 교수에게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방식에 따라, 이 역할은 외부의 세력을 학원내에 끌어들일 通路가 될 위험성도 있으며, 진리를 탐구하는 학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교수 자신도 학생이나 주위로부터의 오해를 의식하여 사회봉사활동에 한계를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회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며, 이에 소비되는 시간도 적지 않다는 데 또 하나의 부담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교수의 부담 외에도 대학행정·운영에의 참여, 청탁받은 원고의 집필 등의 다양한 부담이 있으며, 교수에 따라 위에서 例示된 부담에 있어, 輕重의 차가 있음은 물론이다.

III. 未治한 教授의 處遇

교수의 역할이나 부담은 다양하며, 전문성이 높은데 비해, 그에 상응하는 處遇는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또한 교수의 사회적 地位는 대체로 높은데 비해 전문적 종사자로서의 경제적 수준은 낮은 편이다. 학과에 따라서 教授의 確保가 어려운 것은 보수면에서, 다른 전문직과 경쟁관계에서 불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教授職도 하나의 직업이므로 경제적 여러 사실이 대학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사회적 엘리트들을 교수직에 계속 유치하기 위하여 경제적 補償條件을 충분히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大學教授社會 구성원들의 資質을 높이고 그들의 사회적 공헌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다음에 대학교수의 처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報酬와 厚生福祉面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교수의 報酬水準은 그들 부담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교수의 보수는 그들의 책임의 중요성, 사회적 지위와 위신, 그리고 엘리트를 교수직에 유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아직도 미흡하다. 교수의 보수는 大學財政의 支

〈表 4〉 高等教育 公教育費 支出內譯(%)

年 度	大學別	人件費	運營費	施設費
1978	專門大	41.09	45.13	13.78
	大 學	37.44	44.45	18.11
1979	專門大	41.78	45.86	12.36
	大 學	36.02	40.24	23.74
1982	專門大	42.82	26.94	30.44
	大 學	36.13	28.84	35.03

※ 資料 : 1) 1978~1979년도는 尹正一外, 高等教育의 機會擴大 및 質管理(서울 : 韓國教育開發院, 1979), p. 354.

2) 1982년도는 金永哲 外, 教育投資規模와 漏正單位教育費(서울 : 韓國教育開發院, 1982), p. 82.

出內譯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4년제 대학 公教育費 支出內譯을 보면 최근 5년간(1978~1982년) 人件費가 차지하는 비율은 36% 전후를 유지하였으나 資本的 支出의 比重은 18%에서 거의 배나 되는 35%로 늘어났다. 지난 5년간 教授의 處遇改善보다는 급격히 늘어난 학생의 수용을 위해 施設擴張에 치중해 웃음을 알 수 있다.

外國의 主要 大學의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 교육비의 65~70%가 될 때 정상적 지출형태로 본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빈약한지를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자본적 지출은 많아야 10%, 보통은 5%미만이라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수의 처우가 얼마나 낮은가 하는 것은 그 실제액수를 들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운영비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教育의 質을 결정하는 주요 재정 지표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투자에는 매우 인색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교수의 報酬의 體系上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國公立 大學教授의 경우, 初任俸은 일반적 공무원이나 군공무원보다 높은 편이나 봉급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근무연한이 많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다른 직종보다 낮아지게 된다. 사립대학도, 일부대학을 제외하고 국공립대학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長期勤績의 誘因價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편 職位別 報酬額을 보면, 대학간의 격차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좀 오래된 조사분석 결과이지만 指數上으로는 그동안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採用해 본다. 즉 1979년에 교육개발원이, 국공립대학 조교수 봉급을 100으로 기준하여 교수의 職位間 債給의 差異度를 算出한 바 있다. 이 분석에 의하면, 국공립대학 부교수는 1.18, 교수는 1.37로 각각 나타났으며, 사립대학의 조교수는 1.12, 부교수는 1.31, 그리고 교수는 1.66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교수는 훨씬 낮아 교수가 1.05이다.

〈表 5〉 大學敎授 平均 債給의 差異度(1979年)

大學別	職位別			
	教 授	副 教 授	助 教 授	專任講師
専門大學	1.05	0.81	0.62	0.49
國·公立大學	1.37	1.18	1.00	0.78
私立大學	1.66	1.31	1.12	0.94
外國大學	1.72	1.27	1.00	0.70

※ 註 1) 한국은 국·공립대학 조교수 봉급 기준
2) 외국대학은 10개 주요 대학의 조교수 봉급 기준

資料 : 尹正一 외, 高等教育의 機會擴大 및 質管理, p. 359, p. 361.

이처럼 국공립·사립대학간에 보수의 격차가 심함을 알 수 있으며, 직위별로 국공립대학에서는 보수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나 사립대학의 경우는 보수가 직위별로 차이가 크고 보수 수준도 높음을 알 수 있다. 主要國家의 교수의 직위간 보수의 차이도를 보면 조교수를 기준으로 부교수는 1.27, 교수는 1.72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경우와 비슷하다.

비록 교수의 역할이 직위별로 차이가 없어 보수의 차이를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학문적 업적이나 교육 또는 연구경력으로 직위를 부여하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봉급인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째, 교수는 봉급 외에도 여러 가지 厚生福祉制度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내용에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年金制度에 있어서, 紿興가 會員(교수 자신) 위주로 되어 있어, 개인과 그 가족이 함께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老後의 對策을 위해서도 가족의 안정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紿興額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즉 급여액의 기준이 봉급으로 되어 있고 수당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출의 기초가 되는 봉급의 절대액이,前述한 바와 같이 많지 않기 때문에 年金에 대한 기대가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음은 子女學費 문제다. 대학에 따라서는 교수의 자녀가 입학시,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대학에 입학시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실 등록금

외에도 대학교육을 위한 私教育費로 지난해 1人
당 평균 50만원 내지 70만원이 투입되었다는 점
을 감안할 때, 동록금 외에도 子女學費補助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남의 자녀는 교육
시키면서, 자신의 자녀는 경제적 이유로 진학을
못 시킨다면, 교수의 士氣에 치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住宅과 保健에 관한 복지 문제가 있다.
예컨대 海外에서 우수한 人材를 교수로 유치할
때, 적어도 長期低利로 住宅資金을 응자함으로
써 주택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停年退任 후에
도 醫療保險制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老後의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합은 교수의 장
기근속을 촉진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이미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년교수를 명예교수 또는 초빙교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축적된 학식과 경
험을 활용한다는 장점 외에도 노후에 건강이 허
락하는 한, 전문적 활동을 보장한다는 심리적
보상효과도 클 것이다. 이는 다가오는 未來社會
가 高齡化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전망할 때,
福祉問題와 더불어 생각해 볼 문제일 것이다.

IV. 結 言

대학교수는 시간적으로 여가가 많고 고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직업으로 보는 견해가 있
다. 어느 日刊紙에 대학교수는 1년의 반 이상을
노는 직업으로 소개함으로써 大學校敎社會에 물
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견해는 대
대학교수의 역할과 부담을 外面上으로만 관찰한 데
서 온 그릇된 판단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교수에 대한 役割期待는 매우 다양하며 전
문성을 요하므로 신체적·심리적으로 부담이 과
중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근래 大學의 규모가 大型化됨에 따라 수업과
학생분담지도 등 교수의 부담은 크게 늘어났으
며, 강의와 전문적 성장을 위한 研究의 압력 속
에서 생활하는 것이 교수의 日課이다. 또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로 社會奉仕活動에
도 참가한다. 비록 교수 개인에 따라 先後나 輕重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교수가 이러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教授의 處遇는 그 부담에
비해 빈약하다. 보수의 水準, 보수의 體系, 福
祉厚生面에서 최기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수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육, 학문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先決을 요하는 과제라 하
겠다.

*